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용혜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89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2.

발 의 자:용혜인·한창민·서왕진

정혜경 · 정춘생 · 염태영

이광희 • 유종오 • 박은정

김 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이제한됨.

그런데 특정기업 총수가 수감 중 본인이 지배주주이면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논란이된 사례가 있음. 이에 따라 제한하는 취업 및 기업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에 형집행기간을 포함함으로써, 이른바 '옥중경영'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그 공범이 출자 또는 재직하는 기업 체에까지 취업제한을 확대하고, 제한되는 '취업'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한편, 징역형의 집행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동안에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 제14 조).

법률 제 호
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기업체에 취업"을 "기업체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그 공범이 출자 또는 재직하는 기업체에 취업(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실상 취업한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징역형의 집행기간 및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
- 2.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및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14조(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제14조(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·허가 금지 등) ① 제3조, 인가 • 허가 금지 등) ① -----제4조제2항(미수범을 포함한 다),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 회사등, 국가 ·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 자한 기관 및 그 출연(出捐)이 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 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 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----기업체 및 유죄판결을 없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 받은 사람과 그 공범이 출자 또 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 는 재직하는 기업체에 취업(실 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실상 취업한 경우를 포함한 아니하다. 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-----1.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1. 징역형의 집행기간 및 징역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

된 날부터 5년

- 2.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
- 3. (생략)
- ② ~ ⑥ (생 략)

- <u>을</u>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<u>날부터 5년</u>
- 2.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및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
- 3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⑥ (현행과 같음)